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6.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6.
복지문화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최홍린 의원 등 9명
- 발의일자: 2023. 5. 26.(금)
- 회부일자: 2023. 5. 26.(금)
- 검토기간: 2023. 5. 30.(화) ~ 6. 5.(월)

## 2. 제정이유

- 직장 등으로 인한 일시적 분거형태의 청년 임시가구에서 늦은 결혼으로 인한 독신가구, 이혼 등으로 인한 단독가구 및 노인 고립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안 제5조)
- 나.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연령별·성별·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4.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사회구조 및 가족관계 등의 변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 사별·이혼 등으로 홀로 사는 중년층, 독신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33.4%(7,165,788가구), 대구광역시 32.7%(326,866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2025년 34.3%, 2030년 35.6%, 2050년 39.6%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가구구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인가구에 비해 높은 빈곤율과 사회적 관계망 단절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우울감에 취약한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이 조례안은 1인가구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 「건강가정기본법」(2018년 1월 16일 일부개정, 법률 제15350호) 제3조제2의 2호에 1인가구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과,

- 다인가구에 비해 열악한 고용상황과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이 조례안은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생략>

3.~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